

의안번호	제 419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0년 5월 29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안 번호	419
----------	-----

제출연월일 : 2020년 5월 29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충청북도는 천연물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판단하여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제정 목적(안 제1조)
 - 충청북도 신성장 동력산업인 천연물산업을 육성·발전시킬 수 있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천연물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 제5조)
 -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안 제6조)
 - 연구개발 지원, 기반시설 구축 지원, 마케팅 활성화 지원 등
- 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8조 ~ 제18조)
 - 기능, 구성 및 임기 (안 제9조 ~ 제11조)
 - 위원장 직무, 위원의 위촉 및 해촉(안 제12조 ~ 제13조)
 - 간사, 의견청취, 수당, 운영규정(안 제14조 ~ 제18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5. 관계법령 발취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신성장 동력사업인 천연물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 발전시켜 도민들의 건강한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물”이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천연물이나 광물 또는 이들의 대사산물을 말한다.
2. “천연물산업”이란 천연물의 효능과 기능을 바탕으로 제품 및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천연물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천연물산업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내 천연물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2. 도내 천연물산업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3. 도내 천연물산업 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
4. 도내 천연물산업 연도별 육성 지원계획
5. 그 밖에 도내 천연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천연물산업 연구개발 지원 및 실용화, 판로 등 지원
2. 천연물산업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
3. 천연물산업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정착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지원
4. 천연물산업 관련 세미나,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 유치, 참여 및 참관 등의 지원
5. 해외 교류, 해외시장 진출 또는 마케팅 활성화 지원
6. 국제 공동 연구개발 또는 협력사업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사업의 평가) ① 도지사는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의 수행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해당 기관 및 그 구성원에게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보고서 등을 평가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제출된 서류의 검토, 지도·감독 및 평가결과 보완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천연물산업 육성에 관한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

1. 제5조의 천연물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평가 등에 관한 사항
2. 천연물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제6조에서 규정한 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천연물산업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2명으로 하되, 1명은 천연물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나머지 1명은 도지사가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천연물산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교수 또는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해당 경력이 있는 사람

2. 그 밖에 천연물산업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의 개인사정,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4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천연물산업 담당과장이 된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의 누설금지) 위원이나 관계 공무원은 위원회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취

□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천연물"이란 육상 및 해양에 살고 있는 동물·식물 등의 생물과 생물의 세포 또는 조직배양 산물(産物) 등 생물을 기원(基源)으로 하는 산물을 말한다.
2. ~ 4. <생략>

□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 ① <생략>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과학기술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에 관한 법령 또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7.>
- ④ ~ ⑤ <생략>

충청북도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충청북도는 천연물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판단하여 관련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비전과 방향을 제시하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비용발생 요인

- 동 조례안 제6조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비, 제17조 위원회 참석수당 등

3. 관련 조문

- 안 제6조(천연물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안 제17조(수당 등)

4. 비용 추계결과

구 분	세부내용						
가. 재정수반요인	1.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2. 위원회 구성·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나. 추계의 전제	· 2030 천연물산업 육성 종합계획에 의해 추계						
다. 추계결과	구 분 (단위 : 백만원)	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 2030
	비용추계 내역	317,670	28,315	16,635	33,955	26,515	212,250
	천연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	317,490	28,300	16,620	33,940	26,500	212,130
	위원회 참석수당*	180	15	15	15	15	120
라. 재원조달방안	*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발생하는 경비임 · 국·도·시군비 및 자부담 등						

5. 연도별 비용추계서(세출)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0	2021	2022	2023~2030
천연물 조직배양사용화 시설 구축 등 27개 사업	317,670	28,315	16,635	33,955	26,515	212,350

※ 단위사업별 비용추계내역 : 별첨

6. 작성자 : 바이오산업국 화장품천연물과장 최 응 기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합계				기초년				2020				2021				2022				2023년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가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가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가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가타	계	국비	도비	시군비	가타						
전원물 조적배양농업시설 구축	15,000	7,000	3,400	4,100	500	13,600	6,200	3,200	3,800	400	6,300	2,300	1,100	1,800	100	26,800	15,300	4,800	6,700	0	18,750	9,500	3,800	5,450	0	126,100	88,000	13,200	18,900	6,000	
전원물 지식산업센터 구축	21,950	15,300	2,700	3,950						1,000					14,800	10,880	2,000	2,000		6,150	3,500	700	1,950								
전원물 제체 시설신설 구축	15,600	6,000	4,000	5,600						3,900	1,500	900	1,500		7,800	3,000	1,900	2,700		4,100	1,500	1,200	1,400								
전원물 신소재개발 지원센터 구축	19,000	10,000	4,000	5,000											4,400	1,500	900	2,000		8,500	4,500	1,900	2,100		6,100	4,000	1,200	900			
전원물 안정성 우수성 입증연구 인증센터 구축	50,000	35,000	5,000	7,500	2,500																					50,000	35,000	5,000	7,500	2,500	
전원물 원로소재 정보 지원센터 구축	30,000	21,000	3,000	4,500	1,500																					30,000	21,000	3,000	4,500	1,500	
전원물 소재 제품 인증지원센터 구축	40,000	28,000	4,000	6,000	2,000																					40,000	28,000	4,000	6,000	2,000	
소계	52,240	24,890	10,785	13,035	3,530	2,820	1,530	270	1,200	0	5,220	2,040	765	885	1,530	120	0	0	120	0	120	0	0	120	0	43,960	21,500	9,750	10,710	2,000	
영양직물 신지유물센터(SPC) 구축	5,100	2,040	765	765	1,530					5,100	2,040	765	765	1,530																	
고기능 LED양육물연구소 운영	2,700	1,350	270	1,080		2,700	1,350	270	1,080																						
영양직물 종지보급센터 운영	1,440			1,440		120			120		120				120												960	1,500	750	750	
국가 전원물산업진흥원 설립	20,000	12,000	4,000	4,000																						20,000	12,000	4,000	4,000		
전원물 베타데이 허브센터 구축	20,000	8,000	5,000	5,000	2,000																					20,000	8,000	5,000	5,000	2,000	
한국한의학진흥원 재현본원 유지																															
우수농산물(SAP) 인증 영양직물 생산단지 조성	3,000	1,500	750	750																						3,000	1,500	750	750		
소계	24,280	6,000	10,120	7,140	1,000	3,700	1,600	470	1,630	0	3,600	400	1,820	1,180	200	2,800	0	1,740	860	200	2,300	0	1,590	510	200	11,860	4,000	4,500	2,960	400	
글로벌 한방바이오산업 고도화 사업	4,000	2,000	400	1,600		3,200	1,600	320	1,280		800	400	80	320																	
헬스케어 전원물산업 육성사업	1,500		450	1,050		500		150	350		500		150	350		500		150	350												
기능성 생표주개발 및 산업화 지원사업	900		270	630							300		90	210		300		90	210		300										
전원물 소재 프리미엄 식품개발 및 영농화	10,000		7,500	1,300	1,000						2,000		1,500	300	200	2,000		1,500	300	200	2,000		1,500	300	200	4,000		3,000	600	400	
국내 전원물 소재 공동 연구개발	5,000	2,500	1,000	1,300																						5,000	2,500	1,000	1,300		
해외 전원물지원 국제 공동 연구개발	2,750	1,500	500	750																						2,750	1,500	500	750		
전원물 GMP 제조시설 역량강화 교육	110			110																						110				110	
소계	48,440	19,650	7,160	22,530	100	8,180	2,100	520	5,560	0	1,500	300	160	1,040	0	4,220	2,400	460	1,340	20	5,330	2,400	760	2,140	30	30,210	12,450	5,260	12,450	50	
재정안정비(오박람회) 개최 지원	24,680	5,400	2,280	17,000		8,180	2,100	520	5,560		1,500	300	160	1,040		1,500	300	160	1,040		1,500	300	160	1,040		12,000	2,400	1,280	8,320		
전원물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	1,500	500	500	500											300	100	100	100		300	100	100	100			900	300	300	300		
전원물 생표주운영 성공화 지원사업	8,600	6,000	1,000	1,300	100										2,420	2,000	200	200	20	3,530	2,000	500	1,000	30		2,660	2,000	300	300	50	
스마트 원외 당진원 구축	3,160		1,380	1,380																						3,160		1,380	1,380		
전원물 가격 플랫폼 구축																															
전원물 벤처창업기업 육성 사업	1,500	750	300	450																						1,500	750	300	450		
전원물 스마트업 웹플랫폼(이티) 운영	10,000	7,000	1,500	1,300																						10,000	7,000	1,500	1,300		